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

1. 수입 당사국이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수입 당사국은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가 공급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실체도 그 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록 4나-1의 자국의 목록에 그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을 추가한다.

2. 제1항의 결정을 내리기에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가 그 정보를 입증하도록 그 실체와 회합하기 위하여 3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까지 자국이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요청을 거부한다.

가.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된 대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의 만료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4. 수입 당사국이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부록 4나-1의 자국 목록에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을 추가한 수입 당사국은,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가 공급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국 영역에서 그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을 자국의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그 삭제는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결정을 공표한 날로부터 6월까지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5. 가. 나호를 조건으로, 수입 당사국은 부속서 4가의 제11부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51, 52, 54, 55, 58, 또는 60류에 규정된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나. 수입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최초 5년 동안 매년 1억 평방미터 상당의 물량까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가호에 규정된 대우를 적용한다.

6. 가. 나호를 조건으로, 수입 당사국은 부속서 4가의 제11부의 규칙 2 또는 3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61류 또는 제62류에 규정된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나. 수입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최초 5년 동안 매년 1억 평방미터 상당의 물량까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가호에 규정된 대우를 적용한다.

7. 제5항 또는 제6항에 규정된 연 물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평방미터 상당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입 당사국은 미합중국 상무부 섬유 및 의류 사무국에서 발행한 *상관관계: 미합중국의 관세율표와 미합중국 섬유 및 의류 분류 체계* (2007년) 또는 이의 후속 발행물에 기재된 환산계수를 적용하거나 이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한다.

8.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제4.3조 제5항에 기술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제5항과 제6항에 규정된 최대 물량으로부터 그러한 행위에 관련된 상품의 물량의 3배까지의 물량을 공제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게 이 항을 원용하려는 자국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된 모든 법적·사실적 쟁점에 대한 조사결과와 결론을 자국의 통보에 명시한다.

9.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적정하게 완성되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서명되며 그 상품이 수입당사국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제시되는 적격성 증명을, 수입 당사국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10.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하여 협의한다. 그 협의는 요청의 전달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한다.

나. 이 협정이 발효한 다섯 번째 연도에,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 부속서의 적용을 위하여 제13항에 명시된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11.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자국이 따를 절차를 공표한다.

1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라 함은 당사국,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구매자, 또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공급자를 말한다.

1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는 이 협정이 발효한 여섯 번째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이 종료된다.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

대한민국 목록:

항목 없음

미합중국 목록:

항목 없음

주: 이 부록의 당사국의 목록은, 당사국이 부속서 4-나에 따라 자국의 목록에 변경을 행한 대체 목록을 공표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모든 대체 목록은 그 이전 목록을 대체한다. 수입 당사국은 자국이 부속서 4-나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그리고 자국이 부속서 4-나의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내린 6월 후에 그 대체 목록을 공표한다. 수입 당사국은 그 목록을 공표하는 시점에 수출 당사국에게 모든 대체 목록의 사본을 전달한다.7)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목록을 게재함으로써 자국의 목록을 공표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